Online Series

CO 09-14

북한의 '서해 군사도발 위협' 선전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서해 우리측 령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북한은 NLL 보다 훨씬 남쪽에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선포한 바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NLL 대부분은 북한이 임의로 그어놓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내에 위치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NLL을 사수하기 위한 우리 군의 일반적인 경계활동은 북한 임의의 '서해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침범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북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 고수 위협은 곧 NLL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의 해상경계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북한은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 당국은 우리가 서해해상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 합의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군사 대결적 선언이 나오게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구성된 조평통은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용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평통은 대남공작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전선사업부(통전부)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다양한 대남 및 통일 사업을 담당해 왔다. 남한의 각계각층 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투쟁 전개, 실질적인 남북대화 및 통일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의 대남관계 및 통일정책 대변, 새로운 대남정책 제시 때나 남한 내 주요사건 관련 북한의 입장 발표 등이 조평통의 주요 업무였다. 조평통의 이번 성명 또한 이러한 대남업무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군사적 긴장조성을 위한 그들의 대남공갈용 선전선동 책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대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이제까지 사문화해온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NLL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제 2장 남북불가침 제 11조)"하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 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 10조)"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련협상과 합의가 있기 전에는 NLL을 서해해상경계선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를 부정하거나 폐기된 문서로 치부해 오면서 NLL을 침범하거나 부정하는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북한은 서해해상 경계선을 비롯한 한반도 군사분계선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폐기

하도록 유도하여 남북한 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무력 분쟁화를 시도하고 이와 관련한 남북사회의 여론분열을 조장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NLL 침범을 거듭함으로써 서해해상 경계선에 대한 분쟁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이를 새로운 협상대상으로 고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동시에 육상 군사분계선 역시 끊임없이 정전협정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무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해상 군사충돌(연평해전 등)은 북한이 서해해상의 분쟁지역화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조성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북한은 스스로가 설정한 서해해상 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사항을 적용하면서 남측의 NLL 기점 해상방어 활동을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몰고 가기도 하였다.

북한은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 긴장조성 필요성이 제기 될 때마다 NLL을 침범하거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그들 마음대로 이를 어기는 행태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해해상경계선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조항 폐기를 들먹이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울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유치한 대남 위협 소동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이 그 이유를 새삼스럽게 우리 정부 당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이 이를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최소한 하나라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사문화해 온 지 오래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그들의 대남행태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이용해 온 것이 고작이었다. 6.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 관련 북한의 주장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미국을 비롯한 외세배격을 강조하는 6. 15 공동선언의 '우리끼리' 정신만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결과는 어떤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하던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던가. 북한 당국은 남북한 간 합의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중요시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태도다.

이번 서해해상경계선 관련 남북합의서 조항 폐기선언으로 북한은 대남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정당화하기 하기 위한 대남 전략전술적 명분축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서해해상경계선 관련 군사적 긴장조성 행위를 통한 대남위협 선전선동행위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서해해상경계선을 고수한다는 강한 의지를 견지해야 한다. 북한이 서해해상경계선 침범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태도를 완화해서도 안된다. NLL은 서해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서 국제법 및 국제관례, 남북기본합의서 규정 등에 비추어 충분한 합리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시까지 흔들림 없이 NLL을 고수해야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서해 및 서북도서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수도권 서측 방어에 대한 적극적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상교통로 유지 및 어로구역 확보를 위해서도 NLL을 고수해야 한다. 육상이든 해상이든 국가의 영토는 지키는 대상이지 결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